

행정자치부

징계·시정 요구

제 목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신고(창고신축)에 따른 협의업무 부담 처리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합천군

징계 대상자 합천군 ○○○○과(전 ○○○○과) 지방○○○○○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 ○○○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과에서 문화재 개·보수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상남도 합천군 ○○○○과에서는 2015. 10. 7. 건축주 ○○○이 ○○○면 ○○○리 000번지에 창고(136㎡) 신축신고서를 접수하자 2015. 10. 8. 「국토의 계획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부서로 민원신청서류를 각각 송부하였다.

○○○○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00호/ ○○산 ○○사 일원) 현상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과는 2015. 11. 5. ‘설계도서대로 시행해도 무방함’이라고 협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에서는 2015. 11. 5.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2015. 11. 11. 착공신고 후 현재 건축주가 기초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위 건축대지는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00호/ ○○산 ○○사 일원) 내에 위치하여 건축허가 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현상변경 대상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건축이 가능하다고 협의 통보 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6. 1. 25. 문화재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4.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16.2.24)결과 “창고 신축 부지 주변은 건축물이 없는 밭과 임야로 인공시설물인 창고가 신축될 경우가 가야산 일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되어 현상변경 허가 불허 통지를 받아 현재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건축물 준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건축허가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협의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준공을 기대했던 건축주가 기초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건축인 허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합천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위 건축신고건은 「문화재보호법」에 맞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